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604호

발의년월일 : 2021년 4월 29일
발 의 자 : 이인락 의원
찬 성 자 : 박종호, 정순희, 정택진, 오진환, 이재식, 임준희 의원 (6명)

1. 제안이유

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주민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 및 지원 대상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추후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라. 기타

1) 개정안 : 별　첨

2) 조례안 예고 : 2021. 5. 1. ~ 2021. 5.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노유자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필수 :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노유자시설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3">(남/여)</td></tr>
<tr><td>주 소
(건물명)</td><td colspan="6">(전화:)</td></tr>
<tr><td rowspan="5">신청

사항</td><td>위 치</td><td colspan="6">신청인 주소와 같음.</td></tr>
<tr><td>위험수목
현 황</td><td>수종</td><td></td><td>규격</td><td></td><td>수량</td><td>주
주
주</td></tr>
<tr><td rowspan="2">정 비
방 법</td><td>제거</td><td>수종</td><td></td><td>규격</td><td></td><td>수량</td><td>주
주
주</td></tr>
<tr><td>전지</td><td>수종</td><td></td><td>규격</td><td></td><td>수량</td><td>주
주
주</td></tr>
<tr><td>정 비 사 유</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대체수목 식재계획</td><td colspan="6">- 식재수종 :
- 수목규격 :
- 식재수량 :
- 식재(예정)일 :</td></tr>
</table>

※ "대체수목 식재계획"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및 강풍 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 세대원 동의서 1부.
3.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1부(「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세 대 원 동 의 서

□ **민원인(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 처	비 고

□ **세대원 동의(거주 세대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세대주	주 소	서 명(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이 사유지내 위험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에 따른 세대원 주민 찬성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민원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

○ 식재(예정)일 :

○ 수종 및 규격 :

○ 수　　량 :

본인은 해당 공동주택 세대원을 대표하여 위험수목으로 제거되는 수목의 수량만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의 『대체수목 식재계획』에 의한 수목을 식재하겠으며, 위험수목 제거 후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제42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 등의 행정처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년　　월　　일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택 명)

연락처(H.P) ☎

양천구청장 귀하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